

##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 방법	직 군 (계급)	직 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제1·2차 병합 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행정 (9급)	교육행정	30	28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사서	2	2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전산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기술 (9급)	공업 (일반기계)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시설 (건축)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환경 (일반환경)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화학, 환경공학개론
경력 경쟁 임용 시험	기술 (9급)	공업 (일반기계)	1	1			제1차: 물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시설 (건축)	1	1			제1차: 물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합 계			38	36	1	1	

※ 출제 범위 등

가.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에서 출제됩니다.

나. 교육행정, 사서직렬의 경우 선택과목 득점은 조정점수 적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 2.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
필기시험	100분(10:00 ~ 11:40)	60분(10:00 ~ 11:00)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0.12.31.이전 출생자)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해, 2001. 1월~2월생으로 2018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 가능

다. 거주지 제한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아래의 두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1) 전산, 사서직렬: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렬(직류) 및 계급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산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li> <li>○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li> <li>○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li> <li>○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li> </ul>
사서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li> </ul>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2) 경력경쟁임용시험

-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의 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 2018.1.1. 현재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응시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는 **응시불가**

- <붙임1>“**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자 이어야 합니다.
-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8. 3.30.)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 4) 필기시험 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2>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8. 3.3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였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저소득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 4. 필기시험 문제 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출제합니다.

구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 여부
위탁 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화학, 물리	공개	미회수
공동 출제	17개 시·도교육청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비공개	회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출제한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3.26.(월)~3.30.(금) [최소마감일: 4. 2.(월) 18시]	제1·2차	필기시험	2018. 5. 1.(화)	2018. 5.19.(토)	2018. 6.11.(월)
	제3차	면접시험	2018. 6.11.(월)	2018. 6.28.(목)	2018. 7. 5.(목)

※ 시험장소(필기, 면접)와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http://edurecruit.use.go.kr>)을 통하여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1) 방법: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 (<http://edurecruit.use.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동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시작일 09:00부터 24시간, **접수마감일(3.30(금))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취소 기간 내에는 취소시작일 09:00부터 24시간, **취소마감일(4.2(월))은 18:00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3) 응시수수료: 5,000원
  - 수수료 결제방법: 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불가]**
    -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로 환불)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환불 가능하나, 취소기간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파일
  - 가로 3.5cm×세로 4.5cm, 컬러 반명함, 파일크기 100Kbyte 이하, 확장자명 JPG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반명함 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라.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2)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3)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18. 5. 2부터 면접시험일 까지 온라인 채용 시스템 (<http://edurecruit.use.go.kr>)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5) 접수완료와 동시에“접수번호”가 부여되고,“응시번호”는 접수 취소기간 후에 부여됩니다.
  - ※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6) 응시자는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7)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8)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9)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는 PC 운영체제 윈도우 7, 8(32bit)과 익스플로러 버전 7~11(32bit)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7.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내의 다른 성(性)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님

##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최대 2개 까지 인정(공통적용 1개, 직렬별 1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렬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점 중 택1】 + 【공통적용가산점 1개】 + 【직렬별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가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가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다.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임용직급	자격증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2012. 1. 1이전 취득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2,3급 제외))

※ 공통적용 가산대상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군	직렬(직류)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정	·교육행정	-	변호사	5%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b>&lt;붙임3&gt;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b>
기술	·공업(일반기계) ·시설(건축) ·환경(일반환경)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관련 분야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라. 참고사항

-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은 본인이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2) 위의 “나”(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 특전), “다”(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 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3)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와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가산점 합산방법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점 중 택1】 + 【공통적용가산점 1개】 + 【직렬별가산점 1개】

- 4)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번호(보훈번호) 및 자격증 종류(가산비율)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5) 응시자의 부주의로 자격번호(보훈번호) 및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6) 허위로 가산점을 등록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9. 합격자 결정

### 가. 필기시험

- 1)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교육행정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선발예정인원의 100% 범위

- 2) 경력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정결과는 다음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1) 우수: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 다. 최종합격자

- 1)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합니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 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2)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3)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라.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0. 응시자 유의사항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에 공고합니다.

가. 시험문제책의 과목순서는 시험공고문상의 과목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 장소는 시험장소 공고일에 별도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지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으로만 기재하여야 하며 일반펜, 수정액, 수정 테이프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답안지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처리 됨)

사. 응시자는 필기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가능],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지가 시험장에 들어간 후에는 입실 불가)

아.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폰, PDA, MP3, 스마트워치,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적

발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차단하여 시험실 밖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차. 9급 공개경쟁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하며, 각 과목 만점 40% 이상 득점의 판단기준은 각 과목의 조정(표준)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어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 등이 확인 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타.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파.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4년간 타 시·도 등으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팀, ☎ 052-210-5723~572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 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 [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1부